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1792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179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8 선고 2014나204271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A주택재개발조합

피고, 상고인B

판결 선고2015. 12. 23.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5. 8. 선고 2014나204271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는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 삼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한 각 항목의 돈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거나 원고를 위한 지출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고영한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기택